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장길 의원 외 29명

나. 의안번호 : 제 391 호

다. 발의일자 : 2019. 1. 31

라. 회부일자 : 2019. 2. 7

2. 제안이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각각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해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으나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 및 전기 공사에 포함되어 통합발주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건설사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 하여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하도급 공사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동시에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

런 업종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 시설물의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
- 나. 조례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물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다. 시장에게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토록 함. (안 제4조)
- 라.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하고 예외 규정을 명시함. (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 다. 제출의견 : 의견 있음 (별첨)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데 비해 소방시설공사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합발주되고 있어 하도급 등에 따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바, 조례로 분리발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임.
- 주요 골자는 시장에게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안 제4조)하는 한편, 공공시설물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규정(안 제5조)하고 있음.

[표 1] 제정안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391호) | |
|---|--|
| 안 제1조 (목적) | 조례 설치 목적 |
| 안 제2조(정의) | '소방시설', '소방시설공사' 등을 정의 |
| 안 제3조(적용범위) | 조례를 적용할 공공시설물 공사의 범위 규정 |
| 안 제4조(시장의 책무) | 시장에게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노력의무 부과 |
| 안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 |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하고 예외사항 규정 |

- 참고로, 지난 제8대 의회 후반기 2014. 2월에 본 조례안과 같은 취지의 조례안을 김동욱 의원이 발의하여 제252회 임시회에 (구)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으며,
- 지난 제9대 의회 전반기 2014. 8월에 김동욱 의원이 재차 발의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이 역시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음.

[표 2] 서울시 분리발주 조례 추진 경과

- 김동욱의원 발의('14.2.7.)/찬성9명 → 상임위 “보류”결정 → 임기만료 폐기
- 김동욱의원 발의('14.8.28.)/찬성19명 → 위원회 “상정 보류”(‘14.9.24.)
- 조례안 재상정('17.2.22.) →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 → 임기만료 폐기
- 문장길의원 대표발의('19.1.31.)/찬성의원 29명

■ 관련 국회입법발의 및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

-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범위에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관련 개별법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령에 근거하여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소방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동일하게 분리발주를 시행코자 그동안 국회에서도 다수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대부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으며, 현재 2017.5월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음. ([표 3], [그림 1]참조)

[표 3] 소방시설 분리발주 법률개정안 추진현황

| 연도 | 발의안 | 발의자 | 개정취지 | 처리상태 |
|---------|------------------|-------------|-----------|--|
| 2003.04 |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남경필 의원 | 소방시설 분리발주 | 하자책임 소재 문제 등을 논의하던 중 임기 만료로 폐기 |
| 2008.12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 분리발주 |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로 삭제('08.12) |
| 2009.05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 의원 | 소방시설 분리발주 |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를 한 바 있으며, 이후 동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 2013.04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서병수 의원 | 소방시설 분리발주 |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2014. 4.)가 예정되었으나, 세월호 사고의 발생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되었음. |
| 2014.02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 의원 | 소방시설 분리발주 | |
| 2017.05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 의원 | 소방시설 분리발주 |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18. 1.10)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은 이번 제천화재 관련 긴급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 소위에서 심사할 것을 제안 ⇒ 계류 |



[그림 1] 소방시설 분리발주 법률개정안 추진현황

-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도 등 전국 13개 시·도는 저가하도급 폐해방지, 소방산업 육성 및 발전, 시민안전 향상 등을 지향하며 관련 조례를 전격적으로 제정하여 기 시행 중에 있음([표 4]참조).
- 아래 [표 4]에서 조례 시행 전·후의 발주방법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조례 시행 전보다 시행 이후 분리발주 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 제정효과는 뚜렷함을 알 수 있음.

[표 4] 타 시도 조례 제정 및 시행 전·후 발주방법 변화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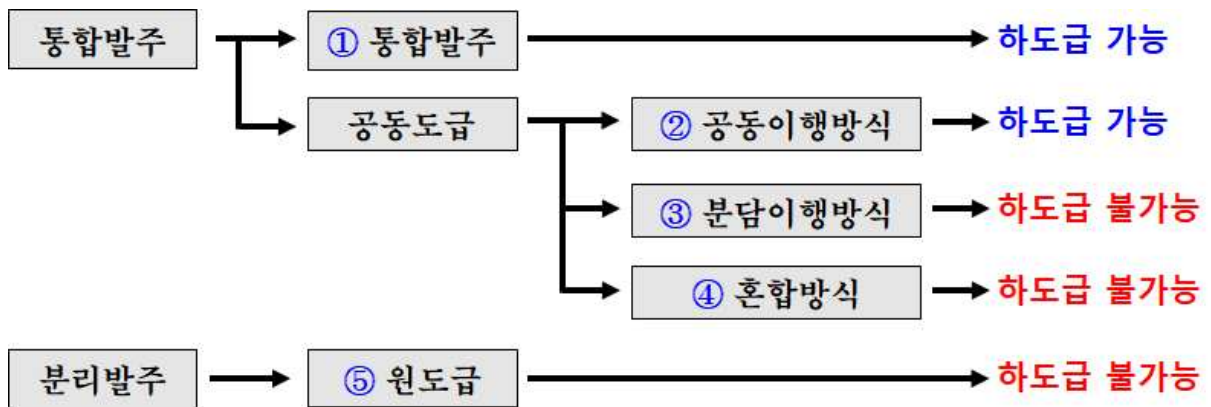
| 구분 | 조례 시행 전 최근 1년간 발주현황 | | 조례 공포일 | 조례 시행 후 '17.12.31일까지 발주현황 | |
|-----|------------------------|-----------------|-----------|------------------------------|----------------|
| | 분리발주 | 통합발주 | | 분리발주 | 통합발주 |
| 합 계 | 1,073건 (66.7%) | 534건 (33.3%) | ↔ | 5,162건 (91.6%) | 476건 (8.4%) |
| 경 기 | 304건 (59.8%) | 204건 (40.2%) | '14.05.07 | 1,248건 (90.4%) | 132건 (9.6%) |
| 대 구 | 73건 (60.8%) | 47건 (39.2%) | '14.11.10 | 375건 (96.4%) | 14건 (3.6%) |
| 세 종 | 11건 (64.7%) | 6건 (35.3%) | '14.12.22 | 40건 (93.0%) | 3건 (7.0) |
| 인 천 | 36건 (62.1%) | 22건 (37.9%) | '15.01.12 | 238건 (93.0%) | 18건 (7.0%) |
| 광 주 | 34건 (64.1%) | 19건 (35.9%) | '15.03.01 | 184건 (96.3%) | 7건 (3.7%) |
| 경 남 | 103건 (67.3%) | 50건 (32.7%) | '15.07.09 | 443건 (93.9%) | 29건 (6.1%) |
| 부 산 | 85건 (69.1%) | 38건 (30.9%) | '15.07.15 | 327건 (92.6%) | 26건 (7.4%) |
| 전 북 | 76건 (100.0%) | 0건 (0.00%) | '15.10.30 | 301건 (92.3%) | 25건 (7.7%) |
| 강 원 | 85건 (88.5%) | 11건 (11.5%) | '15.11.06 | 277건 (93.0%) | 21건 (7.0%) |
| 대 전 | 43건 (75.4%) | 14건 (24.6%) | '15.12.18 | 141건 (87.6%) | 20건 (12.4%) |
| 경 북 | 26건 (41.0%) | 14건 (59.0%) | '15.12.31 | 329건 (93.2%) | 24건 (6.8%) |
| 충 남 | 117건 (80.1%) | 29건 (19.9%) | '16.02.22 | 232건 (83.2%) | 47건 (16.9%) |

| | | | | | |
|-----|-----------------|-----------------|---------------------------|------------------|-----------------|
| 울 산 | 27건 (61.36%) | 17건 (38.64%) | '08.12.31 ('15.11.05) | 81건 (83.50%) | 16건 (16.50%) |
| 전 남 | 24건 (46.2%) | 28건 (53.8%) | '07.12.31 ('11.05.13) | 638건 (99.20%) | 5건 (0.80%) |
| 충 북 | 29건 (67.4%) | 14건 (32.6%) | '06.11.17 ('11.07.08) | 308건 (77.6%) | 89건 (22.4%) |

* 울산·전남·충북의 ()안은 분리발주 가능토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등을 개정한 일자

** 울산은 2015년 11월 5일 개정 전·후 발주현황이며, 전남·충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의 발주현황임.

*** 제주도는 201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미포함



[그림 2] 발주방식 형태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 안 제2조는, ‘소방시설’,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업자’ 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2)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3)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뜻하며,
-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4)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4. 생략
 - ② 생략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 라. 방염처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 2. ~ 5. 생략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본 조례안이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물을 발주하는 서울시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적용범위에 두는 것은 합리적 조치라 여겨짐.

다. 소방시설 분리발주 (안 제5조)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안 제5조는, 안 제3조의 발주자에게 공공시설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직접 도급토록 강제하면서,
- 이와 동시에, 단서를 통해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5)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분할계약 즉,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들을 단서를 통해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중 본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 첫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둘째,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①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와 ②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에 해당함.
- 본 조례안 역시 안 제5조 단서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예외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규정을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분리발주를 허용한 예외 규정에 부합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만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분리발주토록 하자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로 이해됨.

- 결과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분리발주 금지원칙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와 동시에 분리발주가 가능한 경우 역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 역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에 부합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분리발주 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본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현재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기계설비공사와 통합발주를 하고는 있으나 공동도급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분리발주의 형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본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서울시 정책이 공공공사에 있어 하도급을 지양하고 가급적 직접공사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총괄실(건설혁신과), 재무국, 기술심사담당관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 본 안의 이해당사자인 소방업계와 건설업계 간에는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분리발주 찬성의견 (소방업계)

-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종으로 타 업종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 둘째, 대기업의 불법 저가하도급과 부당이득으로 인해 영세한 소방업체는 영업수지악화, 부도발생 등의 경영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 셋째, 분리발주를 하면 원도급사의 중간수익이 없어져 우수한 품질 시공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발주자가 소방업체에 직접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 신속한 하자보수와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의견을 제시함.

● 분리발주 반대의견 (건설업계)

- 첫째, 건설업자와 소방공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함은 불필요한 행정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해 시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며, 자치단체장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법상 위배되는 것으로 분리발주는 발주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라는 주장과

- 둘째, 분리발주 시 공종별 시공자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공사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품질확보가 곤란하여 부실공사의 위험이 증가하고 소방시설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분리발주보다 감리책임강화 및 소방설비 재료의 내화기준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과
- 셋째, 분리발주 시 업체 간 현장조직과 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며, 사고 및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상호 책임전가로 하자보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의견

- 2016.10.23.일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가 「건설업 혁신대책」⁶⁾을 수립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통한 직접시공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과거 통합발주에 의한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 형태인 수직적 발주체제에서 공동도급 및 분담이행방식 등의 수평적 발주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임.
-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서울시의 이러한 발주문화를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비록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개별법령에 분리발주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것이 분리

6) 건설업 혁신대책은 시장방침 324호(2016.10.23)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발주 제도화에 제약이 될 수는 없으며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 되지 않음.

- 왜냐하면 개별법령에 명시한 분리발주 근거라는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에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경우 중 제1호 즉,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에 해당하는 하나의 조건에 불과할 뿐 필수조건은 아니기 때문임.
- 또한, 발주방식의 결정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안 제5조의 단서 중 제2호에서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발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장의 최종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과도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사실과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3개 시도는 유사조례)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보여짐.
- 다만, 본 안에 대해 소방업계와 건설업계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발주 시장과 서울시 정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